

행정자치부 시정요구

제 목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미조치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밀양시, 하동군

내 용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에 따르면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(이하 “산림사업보조금”이라한다)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,

보조금의 반환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‘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에 반환하여야 한다’고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, 보조금의 반환은 ‘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’ 이전에 반환을 받거나, 늦어도 ‘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’와 동시에 산림사업보조금(국비, 도비, 시·군비)은 반환되어야 함에도

밀양시는 아래 【표】 ‘산림사업지 보조금 반환 미납명세’처럼 산림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실행한 2011년 ○○○○(2차 ○○○)사업 등 3건의 ○○○○ 사업지를 한전담부지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하도록 ‘산지의 형질변경’을 허가 하면서, 신청자가 국비는 산림청장, 도비는 경남도지사에게 각각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,

국비 및 도비가 포함된 산림사업보조금을 ○○○○공사 ○○○○처장에게 134천원(국비 67, 도비 20, 시·군비 47) 등 총 3건 1,013천원(국비 506, 도비 152, 시·군비 355)을 밀양시로 직접 반환(2015. 4. 21, 2015. 11. 26.) 하도록 하고도, 감사일(2016. 11. 14.) 현재까지 국비 506천원, 도비 152천원 총 658천원을 산림청장, 경남도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밀양시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.

하동군은 아래 【표】 ‘산림사업지 보조금 반환 미납명세’처럼 산림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실행한 2011년 ○○○○○○○○ 사업 등 2건의 ○○ 사업지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‘산지의 형질변경’을 허가하면서, 신청자가 국비는 산림청장, 도비는 경남도지사에게 각각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,

국비 및 도비가 포함된 산림사업보조금을 ○○○에게 28,175천원(국비 14,088, 도비 4,930, 시·군비 9,297) 등 총 2건 30,567천원(국비 15,762, 도비 4,934, 시·군비 9,871)을 하동군으로 직접 반환(2015. 4. 13, 2015. 10. 13.) 하도록 하고도, 감사일(2016. 11. 14.) 현재까지 국비 15,762천원, 도비 4,934천원 총 20,696천원을 산림청장, 경남도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하동군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.

【표 산림사업지 보조금 반환 미납 명세】

시·군	○○○○사업 실행내역		타용도 전환내역		납부자명	부과일자	납부기한	수납일자	부과금액 (천원)			
	사업명	준공일	내용	면적					계	국비	도비	시·군비
	합계								31,580	16,268	5,086	10,226
밀양	소계								1,013	506	152	355
	2014 ○○○○ (2, 3권역)	2014. 8.20	한전 탐부지 재료적 치장	0.02	○○○○공사 ○○○○처장	2015. 4.10	2015. 5.11	2015. 4.21	134	67	20	47
	2011 ○○○○ (2차 ○○○)	2011. 9.14	주택건립 및 진입로개설	0.16	○○○	2015. 6.26	2015. 8.17	2015.11.26	129	64	19	46
	2012 ○○○○	2013. 1.31	공장건립 및 진입로 개설	0.60	○○○	2015.10.29	2015.12.31	2015.11.26	750	375	113	262
하동	소계								30,567	15,762	4,934	9,871
	○○○ ○○○○	2011. 5. 6	태양광 시설 설치	2.0	○○○	2015.3.12	2015. 4.13	2015. 4.13	28,175	14,088	4,790	9,297
	○○○○조림	2011. 5.13	태양광 시설 설치	1.0	○○○	2015.9.16	2015.10.15	2015.10.13	2,392	1,674	144	574

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

미반환된 국비 506천원, 도비 152천원을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에 따라 반환하시기 바라며,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사업보조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하동군수는

미반환된 국비 15,762천원, 도비 4,934천원을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에 따라 반환하시기 바라며,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사업보조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